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예지 · 김선교
김태규 · 고동진 · 곽규택
김용태 · 윤한홍 · 박충권
김위상 · 윤영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화재 · 구조 · 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.

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 ·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 · 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,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 · 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정차 · 주차 금지장소로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, 화재 · 구조 · 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제32조제6호다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 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 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 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인 곳 가.·나. (생 략)	6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다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에</u> <u>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</u> <u>의 시설이 설치된 곳</u>
7.·8. (생 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